
언 론 중 재 위 원 회
2026년 모의조정대회
모의조정 시나리오 작성 안내

연 구 교 육 본 부
교 육 팀



1. 모의조정 시나리오 작성 안내

가. 서식 요건 및 분량

- (1) 언론조정신청서/준비서면/답변서/제출자료/그 외 서증 등 첨부: 제한 없음
- (2) 모의조정 시나리오(대본): A4용지 기준 15매 이내
 - 글꼴 바탕체, 글자 크기 12p, 자간 0%, 줄 간격 180%,
 - 용지 여백: 위쪽 35mm, 아래쪽 30mm, 왼쪽/오른쪽 25mm, 머리말/꼬리말 0mm
- (3) 모든 서면을 하나의 한글파일에 작성하되, '모의조정 시나리오'가 사건기록 편철 중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편집

나. 주요 사건 서식의 종류

조정 실무상 통상 수반되는 사건 서식	○ 언론조정신청서	· 침해된 법익과 행사하려는 청구권 등을 기재하여 조정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서면
	○ 답변서	· 언론조정신청서에 대한 피신청인 측 항변을 기재
	○ 준비서면	· 신청서·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은 소명 또는 상대방 제출 서면에 대한 추가 항변 등을 기재
	○ (기타) 추가 제출자료 등	· 증거(공문, 계약서, 판결서, 녹취록, 진단서 등) 및 기타 사건 관계 서면
	○ 위임장(및 대리허가신청서)	·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수임인
	○ 방청허가신청서	· 대리권 없이 조정 심리를 방청하는 사건관계인 등
모의조정대회용	○ 모의조정 시나리오(대본)	

다. 양식 및 참고자료(www.pac.or.kr)

- (1) 언론조정신청서 등 각종 양식: [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사건 관련 각종 서식]
- (2) 조정신청서 예문: [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신청방법] 하단 '조정신청서 예문'
- (3)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언론조정중재사례집]
- (4)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정보 자료실]-[연구 간행물]-[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 (5) 위원회 교육자료: [교육 프로그램] 화면 하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 자료]
- (6) <기타> 기존 수상팀 모의조정 시나리오(참가자에게 메일로 개별 송부 예정)

2. 모의조정 시나리오 예시

■ 중재부장: 2026년 0월 0일 언론중재위원회 (지역명)중재부는 사건번호 2026(지역명)조정0000 (청구명) 사건 신청인 ○○○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사건 당사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십니까?

○ 신청인: 신청인 ○○○ 본인이 출석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사회부장 ○○○가 출석했습니다.

■ 중재부장: 사회부장 ○○○를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허가합니다.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언론조정신청서를 참고하여 조정대상보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 중재부장: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답변서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기재)

— 본격적인 조정심리 진행 —

■ 중재위원: (양 당사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정안이 무엇인지 논의)

■ 중재부장: (최종 정리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조정심리 결과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림

1) 조정성립의 경우

■ 중재부장: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 중재부장: 이 사건 조정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정불성립의 경우(※※ 가급적 조정성립 또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권고)

- 중재부장: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정불성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참고 키워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피해자 특정, 개별적 연관성,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사실 확인, 반론권, 동의(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동의의 범위, 언론조정신청, 조정대상보도, 신청인, 피신청인, 합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열람차단(기사삭제), 기사수정, 후속보도, 유감표명,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결정

3. 참여자별 역할 소개

- ※ 실제 모의조정 경연에서는 중재위원, 신청인, 피신청인 역할에 최소 각 1명씩 필수적으로 배정하여야 함(따라서 팀당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가급적 5명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가. 중재위원

중재위원은 분쟁의 이면에 있는 당사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여 쌍방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합니다. 중재위원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원만히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할 것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에게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재위원은 조정제도의 장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취지 등에 대한 중재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에게 중재부가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훈계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 말투를 사용하여 당사자를 대우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의 실제 목적을 탐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합의조항의 법적·사실적 의미와 효력을 알기 쉽게 설명한 뒤,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감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 ※ 중재위원 역할은 중재부장(조정심리 주재), 중재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모의조정 경연 시 중재위원 역할을 2명 이상이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위와 같이 구별하여 작성 가능)

나. 신청인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취재보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부와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더 나은 피해구제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간 양보에 따른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심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중재부의 조정안과 피신청인의 입장에 따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를 갖는 것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한 언론사입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데스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신청인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청구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밝히는 식으로 주장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신청인에게 제안하고 중재부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소송을 거쳐 해결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